

# 瑞山市環境基本條例案 審查報告書

2000. 7. 31  
産業建設委員會

## 1. 審查經過

- 가. 發議日字 : 2000. 6. 16
- 나. 發議者 : 愼俊範 議員 外 6人
- 다. 回附日字 : 2000. 7. 24
- 라. 上程日字 : 2000. 7. 31

##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 愼俊範 議員)

### 가. 提案理由

-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법제상의 조치등)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법적근거로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을 시민의 권리책무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기본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절하게 관리보존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나. 主要骨子

- 환경보전을 위한 시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책무를 규정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적인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안 제5조, 제6조, 제11조).
- 환경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언론, 교육기관, 전문가 및 환경단체 등의 역할을 규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환경보전 실천 운동에 앞장서도록 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함에 있어 지역환경 영향검토제 도입과 친환경적 경영을 실시토록 함(안 제10조, 제13조).
- 환경보전 추진현황을 환경백서를 작성하여 시민에 공표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환경오염행위, 감시, 신고, 예방, 지역 주민홍보제도 할수 있는 환경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19조).
-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의회보고를 의무화하고, 환경개선 사업의 자체재원 조달을 위한 환경보전기금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제21조).
- 환경관련시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한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3조).

##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본 조례는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삶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 시의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의무화하고 환경추진현황을 백서로 작성 시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시민들의 환경운동에 적극적인 참여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 다만,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실시하지 않아 전 시민들의 참여를 위하여 각종 매스컴 및 교육을 통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지방자치시대 새로운 환경정책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안과 같이 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6. 審査結果 : 원안대로 가결**

의안번호	제 158 호
의결년월일	2000. . . (제 회)

## 서산시환경기본조례안

발의자	신준범의원외 6인
발의년월일	2000. 6 . 16 .

# 서산시환경기본조례안

의안 번호	158
----------	-----

발의년월일 : 2000. 6 . 16 .  
발 의 자 : 신준범의원외6인

## 1. 제안이유

-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환경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대두되고 있고, 시민도 깨끗한 공기, 쾌적한 환경속에서 삶을 영위하고자 함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법제상의 조치등)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여 환경분야에 충실을 기하고,
- 21세기는 새로운 환경정책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임.

## 2. 주요골자

- 가. 환경보전을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년차별 환경실시계획을 포함한 시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안 제5조, 제11조).
- 나. 환경보전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언론, 교육기관, 전문가 및 민간환경단체 등의 역할을 규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환경보전 실천운동에 앞장서도록 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 다.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친환경적 경영을 실시하고 시민, 단체 등의 환경보전운동에 협력토록 함(안 제10조).
- 라. 지역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지역환경 영향검토제를 도입함(안 제13조).

- 다. 환경관련시책의 추진과 관리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환경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5조).
- 바. 각종오염 행위의 감시 및 신고와 환경보전에 대한 지역주민에 홍보, 계도를 할 수 있는 환경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 사. 주요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의회보고를 의무화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책무와 행동원칙을 규정함(안 제19조, 제21조).
- 아. 지역내 환경개선사업의 자체 재원조달을 위한 환경보전기금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 3. 기타참고사항

- 근거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 지방자치법 제15조

## 서산시환경기본조례안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시·시민·사업자가 하여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시의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쾌적한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미래세대에게 그 혜택을 계승 및 향유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 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지역환경주권의 보전) 시의 환경은 환경파괴적 힘과 요소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지역환경보전을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품위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8조(회의) ①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1/3이상이 요구시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환경관리담당이 되고 서기는 환경관리업무담당자가 된다.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시민, 사업자의 환경보전을 위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기관의 역할) 교육기관은 미래시민의 환경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청소년을 위한 교육교재의 개발 보급 및 반복적인 환경교육과 지속적인 사회봉사제도의 실천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가 및 민간환경단체) 전문가 및 민간환경단체는 지역환경을 건강하고 쾌적하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 시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하고 자문하며, 지역환경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여 오염물질 배출시에는 지역환경기준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거나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 2 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제11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년차별 환경실시계획을 포함한 시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환경기준의 설정
2. 인구·주택·교통·토지이용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3. 현재의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물질의 변화전망
4. 환경보전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과 사업계획
5.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6.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③시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시는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시는 환경여건의 변화등으로 환경실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은 필요시에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등) 시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수질,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환경영향검토) 시는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자연환경의 보전) ①자연환경과 생태계는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은 환경친화적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3. 시는 공원, 녹지, 하천등 자연환경의 조성과 적절한 보전·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백서) ①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환경백서를 필요시에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6조(환경조사 및 정보의 공개) ①시는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와 시민, 시민단체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시는 시민에 대한 환경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환경에 관한 조사연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환경관련 정보를 상시 조사·수집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환경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교육 및 홍보) 시는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진흥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시민활동의 지원) 시는 시민, 사업자 또는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단체에 의한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기술적인 지도·조언 또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환경감시원의 위촉 및 임무) ①시장은 환경보전활동에 지식과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으로서 덕망과 신뢰가 있는 시민중에서 환경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환경감시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각종 환경오염행위의 감시 및 신고와 환경보전에 대한 지역주민에 홍보·계도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보고) ①시장은 주요환경보전시책의 수립이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과 변경
2. 주요시책의 수립과 변경
3. 환경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
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중요사항

제21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시는 지역내 환경개선을 위한 자체재원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환경보전기금 운용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2조(환경보전업무의 협력강화) ①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등 지구환경문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 제 3 장 환경관리위원회운영

제23조(목적) 시의 환경보전시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관리에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 7인과 위촉직 위원 8인으로 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환경보호과장, 농림과장, 축산해양과장, 건설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⑤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의원, 학계, 환경운동관련단체등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5조(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보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지역환경영향 검토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제27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품위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8조(회의) ①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1/3이상이 요구시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환경관리담당이 되고 서기는 환경관리업무담당자가 된다.

제30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서산시각종 위원회실비변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칩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